

船員災害補償에 대한 強制保險의 比較研究

黃錫甲* · 金成煥**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urance System Relating to
Compensation of Seamen's Accident

Seok-Kab Hwang · Sung-Hwan Kim

<목 차>

Abstract	IV. 現行 強制責任保險制度의 問題點
I. 序 論	V. 結 論
II. 船員共濟 및 責任保險의 概要	參 考 文 獻
III. 船員災害補償保險의 比較	

Abstract

I have comparative studied insurance system relating to Seamen's Accident Compensation comparing with the Seafarers Act. So, I want to suggest its improvement measures as the solving way of its problems.

It is the legal system for the shipowner to compensate the crew under the missing of crew or the losing of personal article. Also, the shipowner must be the insured of seamen in order to perform the seamen's accident compensation entirely, and the insurance by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 Act and Korea Shipping Association Act must be included to this insurance, and thus there is the social securing scope as well as living securing scope in this insurance.

With regard to the security of the seamen's accident compensation as indicated in the aboves, the shipowner has secured its effectiveness by all kinds of insurance, making the crew as the insured. If the above-mentioned matters are generalized, the seamen's accident compensation standard is below the accident compensation standard of ground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worker, and thus the necessity for improvement of the seamen's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is required. Accordingly, as its improvement way is the tentatively named sea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to be presented as the law-making under the exist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law in consideration with the speciality of crew. It is thought which there will have to be the legal and systematic procedures.

I. 序 論

船員法 제98조에서는 船員災害補償의 이행을 위하여 船舶所有者(이하 “船主”라 한다)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船主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원의 재해보상은 육상근로자와 같이 社會保險이 아닌 強制責任保險制度에 의하여 보상을 보장받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船主가 선원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責任保險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水產業協同組合(이하 “水協”이라 한다)과 韓國海運組合(이하 “海運組合”이라 한다)의 船員共濟, 민간손해보험회사의 船員勤勞者災害保障保險(이하 “勤災保險”이라 한다) 그리고 船主責任相互保險(P&I Club)이 있다.

그러나 위의 선원재해보상의 문제점으로 船主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실질임금 이하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액 이하로 가입하는 경우, 船主의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위반, 船主의 지급불능 및 선지금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책임보험의 문제점, 즉, 船主 등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액 이하로 가입하는 경우, 船主 등이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船主 등이 책임보험가입시 실질임금보다 낮추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선원들은 위의 사유로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므로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은 때에 피재선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船員共濟 및 책임보험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고, 현행 선원재해보험의 약관을 선원재해보상의 종류와 補償內容 등을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현행 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선원의 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기로 한다.

II. 船員共濟 및 責任保險의 概要

1. 船員共濟

1) 水協共濟

船員綜合共濟(이하 “종합공제”라 한다)의 피공제자는 선원을 고용한 船主, 선박차용인, 선박관리인

또는 용선인으로서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선원법상 피재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다. 이는 총톤수 25톤 이상의 어선에 승무하는 어선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있으며, 다만, 선원보통공제에 가입한 자는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종합공제 약관 제2조 제2항).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그 선원에 대하여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피공제자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종합공제는 선원법상 船主 등의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강제책임보험에 해당된다.

종합공제의 가입대상은 선원을 고용한 船主이며, 가입방법은 선박단위로 선원을 일괄기명가입(단, 승선원 전원가입 및 공제가입금액이 같을 경우 무기명 가입이 가능)한다. 공제가입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공제가입금액은 선원의 공제가입보상임금을 船主가 임의로 결정하여 가입한다. 그리고 공제료납입방법은 일시납(4회분납 가능)으로 하며, 공제료의 국고보조는 30톤미만은 50%, 50톤미만은 20%, 100톤미만은 10%이다.

선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시에는 요양공제금, 상병공제금 및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며, 장해시에는 장해공제금을 지급하며 또한 소지품유실·사망·행방불명시에는 소지품유실보상공제금, 유족공제금, 장체공제금 및 행방불명공제금을 지급한다. 그 補償內容은 선원법상 災害補償內容과 거의 같다.

그리고 특약가입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 그 특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비전액부담특약은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 한하여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임금미달시에도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내국인 선원은 가입할 수 없다. 둘째, 사용자배상책임부담특약은 법률상 소송제기로 선원법상 배상책임을 초과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범위내에서 그 초과된 금액을 보상한다. 셋째, 부대비용부담특약은 부대비용으로 특약으로 약정된 월임금의 1,420일분을 지급한다. 그리고 보상임금은 선원의 실제임금에도 불구하고 水協에 공제가입시 고지한 재해보상 기준임금으로 하며, 통상임금은 보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¹⁾

2) 海運組合의 船員共濟

(1) 船員普通共濟

海運組合 船員共濟(이하 “海運組合 共濟”라 한다)는 공제가입자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가입자의 선원재해보상책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선원공제 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선원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책임과 그에 관하여 가입자가 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諸費用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共濟는 선원법상 船主 등의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강제책임보험에 해당한다.

가입대상은 조합원, 준조합원 및 공공기관 소유(운영)선박으로 한다. 補償內容은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일시보상, 소지품유실보상 및 행방불명보상이 있으며, 이는 선원법상 재해보상과 거의 같다.²⁾ 그리고 海運組合 共濟의 경우에는 국고보조는 없다.

1) <http://www.suhyup.co.kr/new/Bk/gongje-chapt95.html>

2) <http://www.haewoon.co.kr/ksa2/work/seaman01.html>

(2) 船員特別 및 追加共濟

이 共濟는 船主 등이 선원법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선원이 재해로 신체상 결합으로 장래에 얻을 수익을 상실함에 따라 향후 치료비, 위자료 또는 거동이 불가능하여 호송을 요하는 중환자, 유해의 송환비용 또는 요양기관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할 경우의 이송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한다. 그리고 관습상의 비용으로 사망선원에게 지급하는 조의금, 위로금 등 이와 유사한 비용이나 선원법상 보상금 이외 가입자와 선원(대리하는 단체 포함)간에 관습적인 합의 또는 협약에 의하여 지급된 비용 등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선원특별 및 추가공제는 임의책임보험에 해당한다.

2. 責任保險

1) 勤勞者災害保障責任保險

勤勞者災害保障責任保險(이하 “勤災保險”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한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민사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勤災保險에서 부보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勤災保險과 차이가 있다.

勤災保險은 원래 월남전의 확대에 따라 한국의 근로자들이 미국방위기지의 건설 및 기타 부대사업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게 되므로 이들 근로자들의 재해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보험상품이며, 1965년부터 판매된 것이다.

당시 선원의 재해문제는 水協 共濟 및 船主責任相互保險이 담당하여왔으며, 일반 손해보험회사에서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이하 “勤災保險”이라 한다)에 선원재해보상책임담보 特別約款(이하 “勤災保險”이라 한다)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水協과 海運組合의 共濟는 주로 연근해어선과 내항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어선원을 위주로 한 소규모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共濟만으로는 해운업과 수산업의 발달에 따라 주류를 이루게 된 원양어선과 외항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재해를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주무당국인 교통부와 재무부가 협력하여 민간회사에서 선원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완조치는 선원보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一般勤災保險에 特別約款을 추가하여 선원근재약관의 제정과 이에 따른 보험요율의 조정, 직무외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담보범위의 확장 및 선원보험 미가입 선원의 승선금지와 선박의 출항금지 등이다.

민간손해보험회사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勤災保險 및 使用者賠償責任保險에 선원재해보상책임 담보 特別約款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다.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이 있는데 종래에는 영문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³⁾ 근래에는 국문약관을 주로 사용한다.

영문약관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담보조건 A)과 사용자배상책임보험(담보조건 B)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의 것은 선원법상 船主 등이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강제책임보험이고,

3) 정영석, 선원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험제도를 중심으로—(上), 월간 海技(1995년 11월호), p. 21.

뒤의 것은 선원법상 船主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책임보험을 부담할 경우를 대비하여 船主 등이 가입하는 **任意責任保險**이다.

민간손해보험회사에 의한 **勤災保險**은 선박보험에 가입한 船主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선원재해를 동시에 담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며, 보험요율은 기본요율, 원양어선 할증율, 해외 취업선 할증율 등 위험정도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 전쟁위험,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및 보험료 미납 등의 경우에는 면책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水協의 船員共濟, 海運組合의 船員共濟 등과 마찬가지로 선원 재해보상에 대한 보장이 없다.

2) 船主責任相互保險

현재 세계의 주요 해운국에서는 **船主責任相互保險(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or Association: P&I Club)**이 존재하고, 선박운항에 따른 사고 발생시 船主의 각종 책임손해 및 비용손해를 부보하고 있다. 이 보험을 일반적으로 **船主責任相互保險(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P&I 보험)**이라 한다.

이 보험의 기원은 1855년 런던에서 설립된 The Ship Owners Production Society⁴⁾이 동년 5월 1일에 인수하여 보험사업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 통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보험은 1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생성동기와 내용은 선박보험 · 화물해상보험 등 다른 해상보험에 비하여 불명확한 점이 많은 보험이다.

P&I Club은 세계적으로 약20개사가 있으며, 우리나라 船主는 주로 영국의 Britannica P&I Club 또는 UK P&I Club에 주로 가입해오고 있었으며, 1999년 우리나라에도 P&I Club이 설립됨으로써 韓國船主相互保險組合에 가입하는 船主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P&I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충돌배상책임, 선박제거비용,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선원사고배상책임 등인데, 선원사고배상책임을 다른 보험사고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여러 船主相互保險組合의 담보위험은 거의 동일하다. 조합이 담보하고 있는 위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박의 운항에 따른 선원의 인명상실 또는 상병으로 인한 보험사고이다.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상청구의 내용은 진료비, 병원비, 약품비 및 관계교통비 등의 치료기간의 수익상실,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래수익의 손실 등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오늘날 P&I보험의 담보위험 중 인명사고와 관련된 보상청구의 비중은 적지만 기타 다른 위험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III. 船員災害補償保險의 比較

1. 療養補償

1) 補償要件

船員災害補償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 동법 시행령32조)에 근거한 강

4) The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의 전신이다.

제보험과 이를 초과하여 보상을 약정하는 임의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強制保險補償에서는 선원이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선원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船主가 그 선원에 대하여 요양보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水協 共濟의 종합공제 약관 제10조, 해운조합 共濟 普通約款 제1조 제1항, 勤災保險의 재해보상책임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이다.

또한 선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 共濟에서는 ①종합공제 특약 제2조에 의하여 외국인 선원이 기준임금인 월9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요양비전액부담특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선원이 재해를 입어 船主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②사용자배상책임부담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85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둘째, 海運組合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이다.

셋째, 勤災保險에서는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船主責任相互保險(이하에서는 “선주상호보험”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85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船主가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특히 선주상호보험은 국내외의 어떠한 선주상호보험조합에 의한 보험부보도 인정하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우리나라 선원법은 물론 선원근로계약에 의한 추가보상까지도 보상하는 포괄적 보상개념을 담고 있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제1항(1) 나) 참조).

2) 療養範圍

선원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제도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에 근거한 기본보상보험과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 초과보상을 약정하는 특별보상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요양의 범위에 있어서도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본보상(제86조)에 대한 수협 종합공제(제10조), 海運組合 共濟(보통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 勤災保險(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통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

다만, 선원법상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협 종합공제 特別約款에서 요양비전액부담특약 제2조에 의하여 외국인 선원이 기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동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종합공제의 요양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동특약체결시 가입선원의 보상임금은 종합공제의 요양공제금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療養共濟金 控除額을 약정할 경우에는 위 종합공제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사용자배상책임부담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86조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海運組合 共濟 特別約款의 경우,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서는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추가보상 하며, 이송비용부담보추가약관에서는 재해를 입은 선원이 국내외에서 요양기관으로 이송되거나 본국에 송환되는 경우 이송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하나, 거동이 불가능하여 호송을 요하는 중환자, 유해의 송환비용 또는 요양기관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경우 이송비용을 보상한다.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직무외재해확장담보특별약관 등에 의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勤災保險의 경우,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등에 의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한편,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강제보험규정에 의하여 부보가 가능하나, 동보험의 성격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재해보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원재해보상 관련법규와 근로계약에 따른 재해보상의 범위를 포함한 보험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86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보상한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3) 療養期間

선원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제도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85조)에 근거한 기본보상과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 초과보상을 약정하는 특별보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본보상에 대한 水協 組合共濟(제10조), 海運組合 共濟(보통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 勤災保險의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

또한 선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부담 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85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

둘째, 海運組合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特別約款 제2조 제1항)를 보상한다.

셋째, 勤災保險에서는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제1조,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및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마지막으로 船主責任相互保險의 경우에는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85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船主가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특히 선주상호보험은 국내외의 어떠한 船主相互保險組合에 의한 보험부도 인정하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우리나라 선원법은 물론 선원근로계약에 의한 추가보상까지도 보상

하는 포괄적 보상개념을 담고 있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제1항(1) 나) 참조).

4) 補償除外規定

공통의 補償除外規定이나 면책규정은 항을 바꾸어 고찰하기로 하며(이하 같다), 여기에서는 요양보상의 제외규정에 대하여만 고찰한다.

水協 共濟의 경우, 종합공제에서는 피공제자의 선박이나 자택에서의 요양 등 자가치료로써 소요된 요양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며(제10조 제3항), 입원시 전화사용료 등 요양을 위한 간접비용인 보상하지 아니하며(별표 제3호) 또한 상병선원의 증상이 안정되어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고정상태에 이른 때에는 요양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별표 제5호).

海運組合 共濟 및 勤災保險 特別約款의 경우, 재해를 입은 선원이 국외지역에서 요양기관으로 이송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의 이송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거동이 불가능하여 호송을 요하는 중환자, 유해의 송환비용 또는 요양기관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경우의 이송비용은 적절한 운송용구에 의한 편도에 한하여 실비로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호송인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아니한다(이송비용책임담보 추가약관(海運組合 共濟 特別約款 제1조 및 勤災保險 特別約款 제1조 제3항)).

2. 傷病補償

1) 補償要件

선원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 동법 시행령32조)에 근거한 강제보험과 이를 초과하여 보상을 약정하는 임의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강제보험보상에서는 선원이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선원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船主가 그 선원에 대하여 상병보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水協 共濟의 종합공제 약관 제11조, 해운조합共濟 普通約款 제1조 제1항, 勤災保險의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다.

또한 선원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부담 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87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둘째, 海運組合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및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이다.

셋째, 勤災保險에서는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제1조,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및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마지막으로 船主責任相互保險의 경우에는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87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船主가 재해보상책

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특히 선주상호보험은 국내외의 어떠한 船主相互保險組合에 의한 보험부보도 인정하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우리나라 선원법은 물론 선원근로계약에 의한 추가보상까지도 보상하는 포괄적 보상개념을 담고 있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제1항(1) 나) 참조).

2) 補償內容

선원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제도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에 근거한 기본보상보험과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 초과보상을 약정하는 특별보상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병보상의 범위에 있어서도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본보상에 대한 수협 종합공제(제11조), 海運組合 共濟(보통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 勤災保險(특별約款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통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

다만, 선원법상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협 종합공제 特別約款 제3조에서 사용자배상책임부담특약에서는 선원법 제87조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해운조합 공제 特別約款의 경우, 사용자배상책임부담보특별약관에서는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추가보상 하며,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직무외재해확장담보특별약관 등에 의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勤災保險의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등에 의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한편,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강제보험규정에 의하여 부보가 가능하나, 동보험의 성격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재해보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원재해보상 관련법규와 근로계약에 따른 재해보상의 범위를 포괄한 보험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87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보상한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3) 補償除外規定

水協共濟의 경우, 선원종합공제에서는 상병선원의 증상이 안정되어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고정상태에 이른 때에는 요양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제11조 제3항), 이 경우 요양기간에는 자가요양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11조 제4항).

3. 障害補償

1) 補償要件

선원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 동법 시행령32조)에 근거한 강제보험과 이를 초과하여 보상을 약정하는 임의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강제보험보상에서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원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선주가 그 선원에 대하여 장해보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水協 共濟의 종합공제 약관 제12조, 해운조합共濟 普通約款 제1조 제1항, 勤災保險의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다.

또한 선원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부담 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88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둘째, 海運組合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및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 및 직무외재해확장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特別約款 제2조 제1항)이다.

셋째, 勤災保險에서는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제1조,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 및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손해의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船主責任相互保險의 경우에는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88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船主가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특히 선주상호보험은 국내외의 어떠한 船主相互保險組合에 의한 보험부보도 인정하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우리나라 선원법은 물론 선원근로계약에 의한 추가보상까지도 보상하는 포괄적 보상개념을 담고 있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제1항(1) 나) 참조).

2) 補償內容

선원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제도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에 근거한 기본보상보험과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 초과보상을 약정하는 특별보상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해보상의 범위에 있어서도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본보상에 대한 수협 종합공제(제12조), 海運組合 共濟(보통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 勤災保險(特別約款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통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

다만, 선원법상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협 종합공제 特別約款 제3조에서 사용자배상책임부담특약에서는 선원법 제88조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海運組合 共濟 特別約款의 경우,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서는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추가보상 하며,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직무외재해확장담보특별약관 등에 의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勤災保險의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전쟁위험담보특별약

관 등에 의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한편,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강제보험규정에 의하여 부보가 가능하나, 동보험의 성격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재해보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원재해보상 관련법규와 근로계약에 따른 재해보상의 범위를 포함한 보험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88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보상한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4. 一時補償

1) 補償要件

선원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 동법 시행령32조)에 근거한 강제보험과 이를 초과하여 보상을 약정하는 임의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강제보험보상에서는 선원이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선원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船主가 그 선원에 대하여 상병보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水協 共濟의 종합공제 약관 제17조, 해운조합共濟 普通約款 제1조 제1항, 勤災保險의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다.

또한 선원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부담 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89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둘째, 海運組合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및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特別約款 제2조 제1항) 이다.

셋째, 勤災保險에서는 비업무상재해화장담보추가특별약관 제1조,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및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船主責任相互保險의 경우에는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89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船主가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특히 선주상호보험은 국내외의 어떠한 船主相互保險組合에 의한 보험부도 인정하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우리나라 선원법은 물론 선원근로계약에 의한 추가보상까지도 보상하는 포괄적 보상개념을 담고 있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제1항(1) 나) 참조).

2) 補償內容

선원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제도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에 근거한 기본보상보험과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 초과보상을 약정하는 특별보상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병보상의 범위에 있어서도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본보상에 대한 수협 종합공

제(제17조), 海運組合 共濟(보통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 勤災保險(特別約款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통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

다만, 선원법상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협 종합공제 特別約款 제3조에서 사용자배상책임부담특약에서는 선원법 제87조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海運組合 共濟 特別約款의 경우,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서는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추가보상 하며,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직무외재해확장담보특별약관 등에 의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勤災保險의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등에 의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한편,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강제보험규정에 의하여 부보가 가능하나, 동보험의 성격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재해보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원재해보상 관련법규와 근로계약에 따른 재해보상의 범위를 포함한 보험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87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보상한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5. 遺族補償

1) 補償要件

선원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 시행령32조)에 근거한 강제보험과 이를 초과하여 보상을 약정하는 임의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강제보험보상에서는 선원이 직무상 또는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船主가 그 선원에 대하여 장해보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水協 共濟의 종합공제 약관 제13조, 해운조합共濟 普通約款 제1조 제1항, 勤災保險의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상된다.

또한 선원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 共濟에서는 ①사용자배상책임부담 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90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②부대비용부담특약 제4조에서는 유족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상한다.

둘째, 海運組合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 및 직무외재해확장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特別約款 제2조 제1항)이다. 또한 관습상의비용담보추가약관 제1조에서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 유

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 위로금 및 유족보상금 이외의 船主와 선원간의 합의 또는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비용을 보상할 경우이다.

셋째, 勤災保險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 및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船主責任相互保險의 경우에는 선원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선원법 제90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船主가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특히 선주상호보험은 국내외의 어떠한 船主相互保險組合에 의한 보험부보도 인정하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우리나라 선원법은 물론 선원근로계약에 의한 추가보상까지도 보상하는 포괄적 보상개념을 담고 있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제1항(1) 나) 참조).

2) 補償內容

선원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제도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에 근거한 기본보상보험과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 초과보상을 약정하는 특별보상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족보상의 범위에 있어서도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본보상에 대한 수협 종합공제(제13조), 海運組合 共濟(보통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 勤災保險(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통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

다만, 선원법상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입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 共濟에서는 ①사용자배상책임부담 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90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②부대비용부담특약 제4조에서는 유족공체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상한다.

둘째, 海運組合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 직무외재해확장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特別約款 제2조 제1항)를 보상한다. 또한 관습상의비용보증보추가약관 제1조에서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 위로금 및 유족보상금 이외의 船主와 선원간의 합의 또는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비용을 보상한다.

셋째, 勤災保險의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등에 의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강제보험규정에 의하여 부보가 가능하나, 동보험의 성격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재해보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원재해보상 관련법규와 근로계약에 따른 재해보상의 범위를 포함한 보험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90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보상한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6. 葬祭費

1) 補償要件

선원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 동법 시행령32조)에 근거한 강제보험과 이를 초과하여 보상을 약정하는 임의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강제보험보상에서는 선원이 직무상 또는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船主가 그 선원에 대하여 장제비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水協共濟의 종합공제 약관 제14조, 해운조합共濟普通約款 제1조 제1항, 勤災保險의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상하는 경우이다.

또한 선원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共濟에서는 ①사용자배상책임부담 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91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②부대비용부담특약 제4조에서는 장제비율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상하는 경우이다.

둘째, 海運組合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 직무외재해확정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特別約款 제2조 제1항)를 보상한다. 또한 관습상의비용담보추가약관 제1조에서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 위로금 및 유족보상금 이외의 船主와 선원간의 합의 또는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이다.

셋째, 勤災保險에서는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제1조,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船主責任相互保險의 경우에는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91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船主가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한다. 특히 선주상호보험은 국내외의 어떠한 船主相互保險組合에 의한 보험부보도 인정하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우리나라 선원법은 물론 선원근로계약에 의한 추가보상까지도 보상하는 포괄적 보상개념을 담고 있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제1항(1) 나) 참조).

2) 補償內容

선원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제도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에 근거한 기본보상과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 초과보상을 약정하는 특별보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제비의 범위에 있어서도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본보상에 대한 수혈 종합공제(제14조), 海運組合共濟(제1조 제1항 제1호), 勤災保險(特別約款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통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

다만, 선원법상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 共濟에서는 ①사용자배상책임부담 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91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②부대비용부담특약 제4조에서는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상한다.

둘째, 海運組合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 직무외재해확정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特別約款 제2조 제1항)를 보상한다. 또한 관습상의비용담보추가약관 제1조에서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 위로금 및 장제비 이외의 선주와 선원간의 합의 또는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비용을 보상한다.

셋째, 勤災保險의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등에 의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강제보험규정에 의하여 부보가 가능하나, 동보험의 성격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재해보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원재해보상 관련법규와 근로계약에 따른 재해보상의 범위를 포함한 보험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91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보상한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7. 行方不明補償

1) 補償要件

선원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 시행령32조)에 근거한 강제보험과 이를 초과하여 보상을 약정하는 임의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강제보험보상에서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선원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船主가 그 선원에 대하여 행방불명보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水協 共濟의 종합공제 약관 제15조, 해운조합共濟 普通約款 제1조 제1항, 勤災保險의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상하는 경우이다.

또한 선원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 共濟에서는 ①사용자배상책임부담 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92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②부대비용부담특약 제4조에서는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상하는 경우이다.

둘째, 海運組合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 직무외재해확정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가입자(船主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特別約款 제2조 제1항)를 보상하는 경우이다. 또한 관습상의비용담보추가약관 제1조에서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 위로금 및 행방불명보상금 이외의 船主와 선원간의 합의 또는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비용을 보상하는 경우이다.

셋째, 勤災保險에서는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선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船主責任相互保險의 경우에는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92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船主가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특히 선주상호보험은 국내외의 어떠한 船主相互保險組合에 의한 보험부보도 인정하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우리나라 선원법은 물론 선원근로계약에 의한 추가보상까지도 보상하는 포괄적 보상개념을 담고 있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제1항(1) 나) 참조).

2) 補償內容

선원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제도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에 근거한 기본보상보험과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 초과보상을 약정하는 특별보상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방불명보상의 범위에 있어서도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본보상에 대한 수협 종합공제(제15조), 海運組合 共濟(보통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 勤災保險(特別約款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통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

다만, 선원법상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 共濟에서는 ①사용자배상책임부담 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92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②부대비용부담특약 제4조에서는 행방불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상한다.

둘째, 海運組合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제1조 및 직무외재해확장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범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범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特別約款 제2조 제1항)를 보상한다. 또한 관습상의비용담보추가약관 제1조에서는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 위로금 및 행방불명보상금 이외의 船主와 선원간의 합의 또는 협약에 근거하여 지급된 비용을 보상한다.

셋째, 勤災保險의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추가특별약관,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전쟁위험담보특별약관 등에 의하여 특별히 추가하여 보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강제보험규정에 의하여 부보가 가능하나, 동보험의 성격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재해보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원재해보상 관련법규와 근로계약에 따른 재해보상의 범위를 포괄한 보험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92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보상한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8. 所持品遺失補償

1) 補償要件

선원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 동법 시행령32조)에 근거한 강제보험과 이를 초과하여 보상을 약정하는 임의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강제보험보상에서는 선원이 승선중 해양사고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선원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船主가 그 선원에 대하여 승선중 해양사고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 그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水協 共濟의 종합공제 약관 제16조, 해운조합共濟普通約款 제1조 제1항, 勤災保險의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상된다.

또한 선원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부담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93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경우이다.

둘째, 海運組合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범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범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特別約款 제2조 제1항)를 보상하는 경우이다.

셋째, 勤災保險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船主責任相互保險의 경우에는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93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船主가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경우이다. 특히 선주상호보험은 국내외의 어떠한 船主相互保險組合에 의한 보험부보도 인정하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우리나라 선원법은 물론 선원근로계약에 의한 추가보상까지도 보상하는 포괄적 보상개념을 담고 있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제1항 (1) 나) 참조).

2) 補償內容

선원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제도는 선원법상의 강제보험규정(선원법 제98조)에 근거한 기본보상보험과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의 범위를 넘어 초과보상을 약정하는 특별보상보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제비의 범위에 있어서도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기본보상에 대한 수협 종합공제(제16조), 海運組合 共濟(보통약관 제1조 제1항 제1호), 勤災保險(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통적으로 보상이 되고 있다.

다만, 선원법상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의 형태로 보상을 하게 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水協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부담 특약 제3조에서는 선원법 제93조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보상한다.

둘째, 海運組合 共濟에서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선원이 직무상 입은 재해에 대하여 普通約款, 범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가입자(船主 등)의 범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特別約款 제2조 제1항)를 보상한다.

셋째, 勤災保險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 의하여 선원법 제93조의 소지품유실보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주책임상호보험은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에 대한 강제보험규정에 의하여 부보가 가능하나, 동보험의 성격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재해보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원재해보상 관련법규와 근로계약에 따른 재해보상의 범위를 포함한 보험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선원의 사상(사망, 행방불명 및 상병)으로 선원법 제93조 및 사전에 조합의 승인을 얻은 계약 등(근로협약, 취업규칙 혹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대하여 보상한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20조).

IV. 現行 強制責任保險制度의 問題點

1. 序 言

이상에서 船員災害補償의 책임보험으로 水協 및 海運組合의 共濟, 勤災保險과 船主責任相互保險을 비교하였다. 船主 등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船主 등이 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액 이하로 가입하는 경우, 船主 등이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船主 등이 책임보험가입시 실질임금보다 낮추어 가입하는 경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 등의 면책규정의 문제점, 청구권의 상실과 시효 등의 수급권의 보호로서 문제점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船主 등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또한 면책규정에 대한 문제점 및 수급권 등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2. 責任保險上의 問題點

선원재해보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보험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다. 육상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주관하는 산재보험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장이 산재보험가입대상기업이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피재근로자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원의 경우 육상근로자와 달리 이와 같은 사회보험이 없고 책임보험이나 공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선원의 재해보상은 船主에게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첫째, 책임보험의 문제점으로서, 船主 등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船主 등이 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액 이하로 가입하는 경우, 船主 등이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船主 등이 책임보험가입시 실질임금보다 낮추어 가입하는 경우,⁵⁾ 보

5) 이에 대하여 水協에서는 선원의 공제가입시 선원의 실질임금에도 불구하고 船主 등이 水協에 공제가입 시 고지한 임금을 재해보상기준임금으로 하고 있다(수협 종합공제 제3조 제1항 참조).

험가입자의 손해방지의무 또는 감항성의 유지 등이다. 둘째, 면책규정의 문제점으로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셋째, 수급권의 보호로서 청구권의 상실과 시효에 관한 문제점이다.

그리고 선원재해보상제도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책임보험상의 문제점으로 船主의 무보험 상태에서 피재선원이 보상받을 수 없다. 이것은 육상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선보상 후보협급 징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며, 특히 선원법에서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승무증직무외의 재해, 행방불명보상 및 소지품유실보상이 있기 때문이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勤災保險 등에는 이와 같은 보상은 特別約款으로 가입하여 船主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船主는 이와 같은 特別約款에 가입하지 않으면 피재선원은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船主가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선원은 적절한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도 선박은 운항이 계속되고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기간이 종료된다. 그러나 그 사실은 선원에게 알려지지 않고서 선박은 계속 운항되며, 이 경우 선원은 재해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방치하게 된다. 더욱이 보험자는 이 경우 아무런 공식적 통보도 없이 소급적으로 위험에 대한 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⁶⁾

이러한 예가 1996년 Adriatic Tanker호 사건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선박이 선급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또한 분할 보험료를 미납하였다. 그 결과 보험자는 다년간 船主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담보를 종료하였다. 담보는 P&I의 전형적인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개시일로 소급하여 해제하였다. 그 결과 위 사고로 선원의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 및 부상당한 선원과 그 유족이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선원재해보상을 위하여 공제나 船主責任相互保險에 가입한 경우라도 우리 선원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선원재해보상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제나 船主責任相互保險에 가입한 船主는 우리나라 선원법 제98조 및 同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공제나 船主責任相互保險의 경우 피보험자를 船主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우리나라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의 선원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1) 共濟·保險의 未加入 問題

선원법에서는 船主의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98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에 미가입하는 船主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39조 제14호).

그러나 船主 등이 선원법 제98조를 위반하여 선원재해보상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또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재선원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재해보상주체가 船主이므로 船主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재선원의 재해보상을 못 받는 것과 대조하여 보면 船主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불과하다.

6) 전영우, 협행 선원재해보상제도의 한계와 그 개선을 위한 국제적 동향(강제책임보험의 개선을 중심으로), 2001년도 한국해사법학회 학술대회, p.25.

육상근로자인 경우 產災保險法에서는 재해보상 주체가 국가이므로, 당해 사업장이 산재보험가입대상기업이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나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미가입, 산재보험금의 미납, 기업의 파산 등의 사유로 피재근로자가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즉, “선보상 후보험금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나 보험가입시 보상임금은 선원의 실제(평균)임금에도 불구하고 船主가 공제·보험가입시 보험회사에 고지한 기준임금으로 재해보상을 한다(水協 종합공제 제3조, 海運組合 共濟 特別約款 제6조 제2항 참조, 勸災保險 普通約款 제7조 제1항 참조). 예컨대, 선원의 임금이 월100만원인데 船主가 책임보험가입시 기준임금을 월70만원으로 고지한 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차액만큼 재해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2) 被保險者의 變更問題

共濟의 경우 공제계약자는 실제조업에 필요한 선원을 어선단위로 가입시키되 가입선원별로 공제가입금액을 명시하여 기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水協 종합공제 제4조 제1항 및 海運組合 共濟 特別約款 제6조 제1항), 공제기간중 가입선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水協·組合에 통지하고 공제증권에 승인배서를 받아야 하며(水協 종합공제 제21조 제1항 및 海運組合 共濟 特別約款 제6조 제1항), 승인배서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변경된 선원의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水協 종합공제 제21조 제2항 및 海運組合 共濟 特別約款 제6조 제1항). 즉, 선원 재해보상의 保險·契約締結時 보험수의자로 선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특정선원, 즉 피재선원이 보험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의 보험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약정할 수 없고,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한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⁷⁾

가입선원에 대한 공제가입금액이 동일한 경우 어선에 승선한 선원을 전부 가입할 때에는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水協 종합공제 제4조 제2항), 이 경우 공제사고시 승선원수가 공제가입 인원수보다 초과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가입선원 1인당 공제금액은 사고당시의 승선원수에 따라 按分된 것으로 하여 공제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水協 종합공제 제9조 제3항). 예컨대, 선원의 임금이 월100만원이며 승선인원은 15명인데, 船主가 공제가입시 10명으로 공제를 가입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10명분의 재해보상금을 15명이 나누어 재해보상을 받게된다.

따라서 예컨대, 船主가 공제나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가입선원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船主가 담보의 이행, 선급, 법령 및 감항성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책임보험에 해지되거나 보험회사에서 보상액을 감액하는 경우(韓國船主相互保險 보험계약규정 제2-1조, 제16조 및 제17조), 선원들은 위의 사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므로,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은 때에 피재선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적게 받을 수 있게 된다.

3) 共濟·保險料 未納에 의한 解止 問題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하며,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미납하면 효

7) 부산지법, 1986.11.28, 86가합1193.

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勤災保險 普通約款 제3조, 韓國船主相互保險 보험계약규정 제1조 제2항) 또한 보험료를 미납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분납보험료를 미납하여 분납보험료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로 해지한다(水協 종합공제 제6조 제3항, 海運組合 共濟 特別約款 제4조 제3항, 韓國船主相互保險 보험계약규정 제8조 제3항).

따라서 船主가 공체나 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공체금이나 보험료를 船主가 미납하는 경우, 선박의 운항은 계속되고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기간이 종료되고,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은 때에 피재선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4) 共濟 · 保險契約의 無效問題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가입선원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때 및 ②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행위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수협 종합공제 제24조,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8조). 그리고 보험기간내에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된 때와 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험가입의 효력은 상실하며(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7조), 보험계약을 맺은 후 이 계약에서 담보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이다(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8조).

예컨대, 船主가 공체나 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공체나 책임보험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선박의 운항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은 때에 피재선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 共濟 · 保險契約의 任意解止問題

보험계약자(船主 등)는 공체사고발생 전에는 보험계약해지신청서에 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수협 종합공제 제25조, 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8조 제3항,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9조 제1항) 또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장 등의 조사 및 열람(보험가입전에 일릴 의무)에서 조사의 거부 및 회피한 때(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7조 제2항 제3호)에는 회사는 보험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의 해지는 재해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8조 제3항,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이와 같은 경우, 예컨대, 船主가 공체나 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船主가 공체나 보험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선박의 운항은 계속되고 있고, 그 후에 책임보험을 해지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은 때에 피재선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 告知 · 通知義務違反에 의한 解止問題

선원재해보상보험 · 공체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 · 공체증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고용자명세표에 특정선원의 성명, 직책, 급료 등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간추정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하기로 하

였고, 또한 “보험자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하여 서명된 배서가 보험증권의 일부로서 침부되지 않는 한 대리인에게 보내는 통지나 대리인 또는 개인이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보험증권의 어느 부분을 폐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면 피고용자명세표에 기재된 선원이 다른 선원으로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상 변경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새로 교체된 선원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의무는 없다.⁸⁾

왜냐하면 勤災保險계약체결시 보험수익자로 선원이 기재되어 있지만, 특정선원, 즉 피재선원이 보험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의 보험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약정할 수 없고,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한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한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⁹⁾

이와 같은 경우, 예컨대, 船主가 공제나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공제금이나 보험료를 船主가 납부한 경우라도,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중간에 교체된 경우에 船主가 보험회사에 교체된 선원의 이름, 급료 등을 통지하여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를 변경배서를 받지 아니하고 교체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은 때에 피재선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예컨대, 船主가 공제나 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회사에 고지할 사항을 하지 않는 때에는 위 보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할 경우(수협 종합공제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海運組合 共濟普通約款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9조), 특히 이 경우의 보험해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능하며(海運組合 共濟普通約款 제8조 제3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海運組合 共濟普通約款 제8조 제3항, 韓國船主相互保險組合 보험계약규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선원들은 위 보험이 해지된 줄도 모르고 계속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며 또한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은 때에 피재선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7) 損害防止義務와 共濟·保險金 差減問題

船主가 공제나 책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가입선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해의 방지 및 그 경감에 노력하지 않거나(수협 종합공제 제32조 제1항), 선원법에서 정한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재해방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때(海運組合 共濟普通約款 제12조,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13조)에는 보험회사에서 위의 손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을 하지 않으므로(수협 종합공제 제32조 제2항, 海運組合 共濟普通約款 제12조,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13조), 선원들은 위의 사유로 보험회사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므로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은 때에 피재선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적게 받을 수 있다.

또한 船主가 공제나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가입선원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船主가 담보의 이행, 선급, 법령 및 감항성을 유지하자 아니하여 책임보험에 해지되거나 보험회사에서 보상액을 감액하는 경우(韓國船主相互保險組合 보험계약규정 제2-1조, 제16조 및 제17조), 선원들은 위의 사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액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므로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은 때에 피재선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적게 받을 수 있게 된다.

8) 부산지법, 1987.6.23, 86가합3663.

9) 부산지법, 1986.11.28, 86가합1193.

3. 保險者 免責의 問題

선원재해의 경우 재해보상을 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너무 많다. 예컨대, 船主가 선원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수협 종합공제 제18조 제1항, 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4조,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4조), 약물중독이나 기왕증 등 특정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수협 종합공제 제18조 제1항, 勤災保險 特別約款 제2조), 핵연료물질이나 방사능에 의한 오염(수협 종합공제 제18조 제1항, 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4조,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4조),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4조,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4조), 전쟁, 외국의 무력행위, 혁명, 내란, 반란, 폭동 및 이와 유사한 변란으로 발생한 재해(수협 종합공제 제18조 제1항, 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4조,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4조),가입자의 선원이 아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4조), 위법 고용된 선원의 재해 등의 경우(海運組合 共濟 特別約款 제2조), 시력감퇴 등 생리적 노화 또는 악화 및 이와 유사한 질병 및 이로 인한 재해(海運組合 共濟 特別約款 제2조, 勤災保險 特別約款 제2조), 치아와 관련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勤災保險 特別約款 제2조) 등의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므로 피재선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왕증의 경우에는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악화의 정도를 넘어서 급속히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¹⁰⁾와 행정해석¹¹⁾이므로, 보험약관상 면책규정과 판례 및 행정해석과 맞지 않다. 또한 시력감퇴 등 생리적 노화 또는 악화 및 이와 유사한 질병 및 이로 인한 재해, 치아와 관련된 질병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선원법상 재해보상의 범위에 해당되지만 위의 공제나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위배된다.

그리고 위의 대부분의 재해의 경우, 만일 산재보험법과 같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면 피재선원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해이다.

4. 受給權의 保護

1) 請求權의 壓失

海運組合 共濟의 경우, ①가입자가 재해통지 또는 공제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및 ②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재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는 청구권을 상실한다(普通約款 제15조).

勤災保險의 경우, 위의 海運組合 共濟의 경우와 같다(普通約款 제16조).

船主責任相互保險의 경우, 위의 海運組合 共濟의 ①호의 규정과 같으며, 또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제43조 제1항 내지 제4항).

따라서 예컨대, 船主가 공제나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가입선원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船主가 재

10) 大判 1993.2.12, 92누16553.

11) 부산청선원 1991.12.26, 33750-10413.

해통지 또는 공체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15조,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16조, 韓國船主相互保險組合 보험계약규정 제43조 제2항),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15조,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16조),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재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15조,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16조)에는 그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는 청구권을 상실하므로(海運組合 共濟 普通約款 제15조,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16조, 韓國船主相互保險組合 보험계약규정 제43조), 선원들은 위의 사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하여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므로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재해를 입은 때에 피재선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 時效期間

공체나 책임보험에서 재해보험청구권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수협 종합공체 제38조, 勤災保險 普通約款 제20조, 韩國船主相互保險組合 보험계약규정 제43조 제3항 참조), 선원법에서는 재해보상청구권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위반이다.

V. 結論

선원의 재해보상이 사회보험이 아닌 船主의 책임보험에 따른 문제로서, 船主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액 이하로 가입함으로써 선원이 전혀 혹은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船主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충분한 금액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 위반, 고지의무의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자면책이 되는 경우로서 船主에게 보상금 지급능력이 없는 때도 있다.

따라서 선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기존의 선원법상의 책임보험하에서는 선원의 재해보상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가칭 “선원재해보상보험법”을 새로 입법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본고에서는 입법방향에 대하여만 제시하고자 한다.

입법시안에서 목적은 船員災害補償保險事業(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행하여 선원의 직무상의灾害를 신속하고公正하게 補償하고, 災害豫防 기타 선원의 福祉增進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시안에 의한 保險事業은 海洋水產部長官¹²⁾으로 하며, 國庫의 負擔할 것을 규정한다.

가칭 선원재해보상보험법의 가입대상은 모든 선원으로 한다. 이와 같이 모든 선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임보험의 미가입,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미달하여 가입하거나 실질임금을 낮추어 가입하는 문제, 계약의 무효, 보험료 미납이나 분납보험료의 체납 및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의 해지, 가입자의 임의해지 혹은 손해방지의무위반과 보험금 차감의 문제 등 현행 책임보험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현행 선원법상의 재해보상비율은 산재보험법에 미달한다. 따라서 새로운 선원재해보상보험법은 산

12) 同法을 관장하는 기관을 勞動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同法의 관장기관을 勞動部 혹은 海洋水產部할 것인지는 입법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재보험법에 미달하는 선원법의 보상 비율을 적어도 산재보험법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선원법은 재해보상 중 유족보상, 장해보상 등의 지급방법으로 일시금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재 선원이나 그 가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요양보상과 관련해서 산재 보험법에서는 요양기간에 제한 없이 요양을 제공하는 이외에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 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선원법에서는 요양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면 일시금만을 지급하고 요양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피재선원과 그 가족은 부상 또는 질병이 이후 단시간에 완치되지 않는 경우 생계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입법안에서는 상병보상, 장해보상 및 유족보상을 산재 보험법과 같이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또한 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임금순응변동제(슬라이드 시스템)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책임보험하에서는 공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면책규정이 너무 많으며 또한 공체·보험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공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船主의 관계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재해, 기왕증 등 특정질병에 의한 재해,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재해,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재해, 시력감퇴 등 생리적 노화 또는 악화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치아와 관련된 재해 등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입법안에서는 면책규정을 최소화하고 보상의 여부는 「직무상 재해」 및 「승무중 직무외의 재해」 판정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현행 선원법상 선원이 乘務中 職務外의 災害를 입은 경우 요양보상은 3월의 범위내에서, 상병보상은 3월의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유족보상은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제정법에 위의 승무중 직무외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同法에 규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船主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면 될 것이다. 둘째, 승무중 직무외의 재해는 제정법에 추가하지 않고 현행 선원법상 船主의 책임으로 하고, 직무상 재해만을 제정법에 적용한다.

해운조합의 공체, 근재보험 및 일부 船主責任相互保險의 경우에는 청구권 상실 규정 또는 제3자의 보험금청구 금지 규정 등의 제약으로 피재선원이 원활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해운조합 공체와 근재보험의 경우 재해보험금 청구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여 현행 선원법 및 산재보험법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다.

새 입법은 이러한 諸問題들이 해결되는 방향, 즉 청구권 상실의 사유를 최소화하고 특히 선원의 직접청구권이나 수급권보호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林東喆·鄭暎錫, 海事法規講義[2판], 서울: 學現社, 2000.

(재)한국해상교통정책연구소, 선원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부산: (재)한국해상교통정책연구소, 1986

- 정영석, “선원 재해보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상, 하)”, 월간 해기(1995. 11, 12)
- 손해보험협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 수협중앙회, 선원종합공제 약관 및 특별약관
-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계약규정
- 労働災害補償法論(窪田隼人教授還暦記念論文集), 京都: 法律文化社, 1985
- 藤崎道好, 船員法總論, 東京: 成山堂, 1975
- 武城正長, 海上労動法の研究, 東京: 多賀出版, 1985
- 別冊 ジュリスト 増刊 労働法の争點, 東京: 有斐閣, 1979
- 山戸嘉一, 船員法一解説と研究一, 東京: 海文堂, 1954
- 西村健一郎, 災害補償と損害賠償, 東京: 一粒社, 1988
- 船員問題研究所編, 現代の海運と船員, 東京: 成山堂, 1987
- 日本労働法學會, 日本労働法學會誌76—労災補償法の理論的課題, 東京: 総合労働研究所, 1990
- _____, 講座21世紀の労働法7—健康・安全と家庭生活, 東京: 有斐閣, 2000
- 住田正二, 船員法の研究, 東京: 成山堂, 1973
- 土井智喜, 海上労動講座, 東京: 成山堂, 1967
- 蒲 章, 船員労働災害補償の研究, 東京: (財)日本海事廣告協會, 1983
- 荒木誠之, 労災補償法の研究, 東京: 総合労働研究所, 1981
- 厚生省保險局企劃課 外, 平成6年版船員保險法解説, 東京: (財)船員保險會